**근로계약**

xxxxxxx(이하 "사용자")와 000000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본 근로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는(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이에 다음과 같이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조(계약기간)**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이 2020년 2월 17일부터 유효한 개방형 고용계약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제2조(수습기간)**

(1) 양 당사자는 직원이 고용된 후 처음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수습 기간 동안 급여는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2) 회사는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서면 통지함으로써 고용기간 언제든 혹은 수습기간 만료 시기에 해고할 수 있다. 회사는 해고서면통지에 갈음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1) 근무장소 : 근로자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근무하며, 근무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다.

(2) 업무내용 :

근로자는 수석회계책임자로 임명되어, 부사장 겸 총책임자(APJ)인 xxxxx님께 보고한다.

근로자는 직무 수행하기 위한 시간, 지식, 기술, 관심 등 본인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4조(근로 및 휴게시간)**

(1) 근무시간 : 정상적인 근로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특성상 직원이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작업 소요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00-14:00 사이에 1시간의 휴식 시간이 부여된다.

제5조(근무일 및 공휴일)

(1) 당사자들은 직원의 근무일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점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 유급휴일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휴일

**제6조(연차유급휴가)**

(1) 1년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제1항의 15일에서 공제된다.

(3)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시기를 변경한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의 연말에 소멸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며,

이에 관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당사자는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7조(급여)**

(1) 연봉 : 1억 2,000만원, 월급여 : 1000만원

(2) 제1항에 언급된 급여 이외에 근로자는 '계정집행위원회 계획'에 따라 발생되고 계산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3) 회사는 매월 첫 근무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월급여 및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 매월 마지막 날에 고용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지불한다.

(4) 회사의 가치는 노력, 우수한 고객 서비스, 탁월한 배송에 기반한다. 회사의 직원들은 팀과 회사 성과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이에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연 실적 검토 및 연봉 상승 평가를 한다. 근로자는 연 성과 검토 및 연봉 상승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첫 3분기까지 고용되어야한다.

**제8조 (퇴직급여)**

(1)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계속근로연수 각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평균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다. 계속 근로연수의 최초 1년 이후,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된다.

**제9조 (계약 종료)**

(1)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통지에 갈음하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고의적으로 사내규칙·규정을 위반한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1) 계약에 따른 고용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하는 신원조사를 충분히 이행하고 완료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직무발명 및 보안약정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 성과검토과정에 참여하고 충분히 정리하여야 한다.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이 계약의 양 당사자는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했고, 각 당사자는 아래 날짜 및 연도에 각각 1개의 원본을 보유합니다.

날짜 : 2020년 1월 31일

**사용자**

**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21 xxxxxxx

**대표자 성명 :** xxxxxx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자**

**주소 :** (0673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xxxxx

**생년월일 :** 19xx. xx. xx.

**성명 :** xxxxxxx
서명 : \_\_\_\_\_\_\_\_\_\_\_\_\_\_\_\_\_\_

**첨부 :**

직무발명 및 보안약정서(Proprietary Information and Inventions Agreement)

회계집행위원회 계획(Account Executive Commission Plan)